#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2011년 각각 서울무형문화재 북촉, 돈화문 교육전시장을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 전시 등의 전승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나.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보유한 기능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무형문화재를 직접 경험 함으로써 전승 가치에 공감하고 전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시설개요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 재 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 유 자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일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 ○ 사업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연 642,017천원(2023년 예산안)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제3호)
  - 추진 필요성
  - 시민 이용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서울무형유산의 전문화·대중화, 대시민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 민간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 대처에 유연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주요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전승자,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보유자 등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37조 (전승지원 등)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39조(전승지원 등)

-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만료일(2022.12.31.)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시 의회의 동의<sup>1)</sup>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나.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현황

 서울시는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傳承: 문화, 풍속, 제도를 이어받아 계승함) 지원을 위해 서울시 소유인 북촌 전수 교육시설과 돈화문 전수 교육시설을 각각 2005년, 2011년부터 운영 중임.

##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시설 개요>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무상사용)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 수탁기관	㈜ 예문관		

<sup>1) 「</sup>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서울무형 문화재기능보존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회계 부적정 집행 등 '보조금 유용'2)문제로 인해 사업형태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문관이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22년 민간위탁금은 5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액되었으나 2021년 돈화문 교육전시장의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1억 1천6백만원의 민간위탁사업비가 단년도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 < 최근 3년.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600,000	616,930	538,318
민간위탁사업비	_	116,000	_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중 '북촌 교육전시장'의 경우, 바느질 등 규방문화 관련 공간으로 교육 및 체험이 이루어지며, '돈화문 교육전시장'은 금속 공예 및 전통주 등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을 교육 및 전시를 해왔음.
- 그러나 2005년 개관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북촌 교육전시장은 한옥 보수 등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임시휴관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sup>2) 2012</sup>년~2016년 무형문화재 전시지원 보조금 환수액 및 가산금 등 미반납금 (520백만원)에 대해 2018년 민사소송 제기 후 2022년 4월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2022년 5월 손해배상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수납 완료됨.

- 북촌 교육전시장의 운영이 2019년에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금이 감액되지 않은 것은 사업 규모·인력 감축 없이 북촌과 돈화문 2개의 교육장에서 해오던 사업을 돈화문 1개 교육장에서 모두 수행해왔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실적 >

	2019년		2020년		2021년	
	과정(개)	인원(명)	과정(개)	인원(명)	과정(개)	인원(명)
교육	38	6,441	34	1,628	35	3,216
체험	16	1,668	5	65	4	146
전시	31	33,558	10	3,011	17	15,096

- 최근 3년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실적을 보면, 동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체험, 전시 프로그램은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운영했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2021년~2022년 사용자 만족도에서 이용자의 반복·기초적인 불만 요소인 공간 문제, 커리큘럼의 다양성 문제, 수업체계 부족 등이 제기되었으므로 개선 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 민간위탁 타당성

 어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의 수탁기관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 전시장 관리·운영,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

- 따라서 문화시설 운영・관리, 홍보・마케팅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추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함과 동시에 체계적 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만, 현 수탁기관은 매년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교육전시장의 인지도 상승, 무형문화재 비인기종목 활성화, 교육 및 체험 프로 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불이행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해 보임.

####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지도·점검 결과 >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원(5명) 미달 종목 개설 운영 문제	완료
'19.12.6./12.11.	리플릿 외부 비치 홍보 필요	완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부분 실수(일반관리비)	완료
	대관료 이체 통장 잘못 연계 단순 실수	완료
	재물조사표 재작성	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 협조 개선, 인근 문화시설과의 협조 필요	완료
'20.11.25./12.8.	인건비 지급 관련 단순 계산 실수	완료
	2020년 구입물품 미등록, 누락 개선	완료
	회계담당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완료
	물품 구입시 검수조서 미작성 및 물품대장에 취득 단가 및 불용사유 작성 권고	완료
'21.11.30./12.10.	지문인식기 도입 등 복무시스템 정비	완료
	전시관리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과정 미흡	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 협조 개선, 인근 문화시설과의 협조 필요	추진 중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의 종합성과평가 총점은 70.68점으로 재계약 가능 점수인 75점보다 4.32점이 낮으며, 2019년에 이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학교,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과 인근의 문화시설(운현궁, 돈화문 국악당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이 요구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1년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우리회계법인, 2021.1.1.~2021.12.31.)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시간외 근무대장 문서화 및 관리 강화 필요, ▶비교견적서 양식 미흡, 등을 지적 받은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른 회계 관리의 소양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반 호

179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2011년 각각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을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 전시 등의 전승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나.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보 유한 기능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무형문화 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전승 가치에 공감하고 전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전 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1항에 의 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 시설개요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 재 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자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 유 자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일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 ○ 사업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 연 642,017천원('23년 예산안)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제3호)

# ○ 추진 필요성

- 시민 이용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서울무형유산의 전문화·대중화, 대시 민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 민간네트워 크를 보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 대처에 유연한 민가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주요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전승자,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보유자 등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전승지원 등)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39조(전승지원 등)

-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팀 차미래 (☎ 2133-2617)